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1가단5058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욱, 이향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철, 신현영

변 론 종 결 2021. 6. 10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의 2017. 9. 14.자, 2019. 10. 1.자 금전증여계약을 각 10,000,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한국산업은행은 2010. 6. 28.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에게 3,536,000,000원을 대출하였다.

나. 원고는 주식회사 D와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도받은 후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283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. 7. 24. 위 법원에서 “C는 원고에게 100,542,652원 및 그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6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9. 8. 10. 확정되었다.

다. 피고는 C의 모친으로 2017. 9. 14. E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제6층 G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017. 9. 21.부터 2019. 9. 21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 그 후 피고는 2019. 10. 1.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97,000,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2019. 10. 1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호증, 을 제9,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원고의 채무자인 C의 모친으로 고령에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E과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E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2017. 9. 14.자 10,000,000원과 매매대금 중 2019. 10. 1.자 10,000,000원은 피고의 자금이 아니라 채무자인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.

채무자 C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017. 9. 14. 임대차보증금 중 10,000,000원을, 2019. 10. 1. 매매대금 중 10,000,000원을 각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, 원고는 2019. 10. 1.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. 10.경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. 2. 16.에서야 이 사건

사해해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2017. 9. 14. 및 2019. 10. 1.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1. 2. 16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년 전에 이미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의 존재 및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본안(청구원인)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채무자 C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017. 9. 14. 임대차보증금 중 10,000,000원을, 2019. 10. 1. 매매대금 중 10,000,000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나, 을 제1 내지 1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2017. 9. 14. 임대차보증금 중 10,000,000원을, 2019. 10. 1. 매매대금 중 10,000,000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차웅